

임금피크제 운영요강

제 정 : 2015. 8. 31.
제1차 개정 : 2015. 12. 18.
제2차 개정 : 2016. 12. 16.
제3차 개정 : 2019. 9. 27.
제4차 개정 : 2022. 12. 21.
[제5차 개정 : 2023. 6. 7.](#)

제1조(목적) 이 요강은 「인사관리규정」 및 「보수규정」에 따른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요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임금피크제”란 근로자의 정년이 도달하기 이전 일정기간의 임금을 일정 비율 감액하는 제도를 말한다.
2. “피크임금”이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, 피크임금의 세부적인 산정은 [별표2]에 따른다.
3. “전문위원”이란 교수위원, 자문위원, 감사위원, 상담위원 등으로 일반직원 중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는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직 :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내에 도래하는 직원
2. 사무직 및 별정직 : 정년퇴직 예정일이 2년 이내에 도래하는 직원

제4조(적용시기) 임금피크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개시되어 퇴직시까지 적용된다.

1. 일반직 : 만 57세가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
2. 사무직 및 별정직 : 만 58세가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

제5조(직무부여 등) 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능력과 경험이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는 [별표1]과 같다.

- ③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중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직위를 부여한다.
- ④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서 제1항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화 적응, 직무전문성 함양, 퇴직·전직 준비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직종의 변경)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만 58세가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별정직으로 직종을 변경한다.

제7조(종합평정) ①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의 종합평정은 인사담당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정 결과는 보직, 이동, 정년퇴직 후 재고용, 교육훈련, 내부평가급 차등지급 및 경평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7조의2(직무평가)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직무평가는 「인사관리규정 시행요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보수) 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보수는 피크임금(기본연봉, 직무연봉, 내부평가급), 경평성과급 및 제수당으로 구성한다.

- ② 피크임금에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연차별 임금지급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일반직 (제6조에 [따라](#) 별정직으로 직종 변경된 자 포함)

- 가. 1년차 : 피크임금의 77%
- 나. 2년차 : 피크임금의 60%
- 다. 3년차 : 피크임금의 50%

2. 사무직

- 가. 1년차 : 피크임금의 55%
- 나. 2년차 : 피크임금의 50%

3. 별정직 (제6조에 [따라](#) 별정직으로 직종 변경된 자 제외)

- 가. 1년차 : 피크임금의 50%
- 나. 2년차 : 피크임금의 45%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제7조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임금 총합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한다.

- ④ 경평성과급 및 제수당은 「보수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

제9조(퇴직금 등) 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중간정산 할 수 있다.

②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는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 또는 혼합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 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.

제10조(복지)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복지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직급을 적용하여 「복지규정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

제11조(근로조건 등) 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제8조 제2항 각호의 임금지급률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.

1. 일반직 (제6조에 따라 별정직으로 직종 변경된 자 포함)

가. 1년차 : 주 30시간 근무

나. 2년차 : 주 24시간 근무

다. 3년차 : 주 20시간 근무

2. 사무직

가. 1년차 : 주 22시간 근무

나. 2년차 : 주 20시간 근무

3. 별정직 (제6조에 따라 별정직으로 직종 변경된 자 제외)

가. 1년차 : 주 20시간 근무

나. 2년차 : 주 18시간 근무

②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하여 이 요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「취업규칙」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1조의2(퇴직후 재고용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 후 2년 이내의 계약직으로 재고용이 가능하며, 이때 관련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한다.

1. 임금피크 기간 중 탁월한 성과 등으로 내부 성과평가기준상 최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업무성과자

2. 직무특성상 연속적 수행을 위해 고용연장이 불가피한 경우

3. 육아·군(軍) 휴직자 대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

제12조(기타) 이 요강은 법률 및 정부의 지침, 제도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.

부칙(제정)

이 요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요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요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에서 정한 적용시기가 도래한 직원은 이 요강 시행일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. 이 경우에도 제8조의 연차별 임금 지급률 적용을 위한 연차 구분은 제4조의 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정한다.

부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요강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17년 6월 30일 이전에 임금피크제 적용이 개시되는 직원의 “기본성과연봉”은 “내부평가급”으로 본다.

부칙(3)

(시행일) 이 요강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4)

제1조(시행일) 이 요강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요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임금피크제 적용중인 직원에 대해서 제2조 및 제8조는 기존 요강에 따른다.

[부칙\(5\)](#)

[\(시행일\) 이 요강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](#)

[별표1]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

직무	직무정의	직무내용
홍보위원	· 기획기사 작성, 외부기관·대학 강연 등 홍보활동 전담 수행으로 무역보험 및 공사 인지도·대외 이미지 제고	· 언론기고 및 홍보자료 · PR활동
대외협력위원	· 중소기업청, 무역보험학회 등 정부·학계 네트워킹과 파견을 통한 대외협력 및 이해관계자 채널 강화	· 정부, 학계 네트워킹 · 파견기관 업무 수행
상담위원	· 중소기업 대상 무역보험 및 신용보증 종목에 대한 마케팅, 포괄유치, 대외협력 등을 통해 신규 고객 유치 및 기존 고객관리, 은행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 확대	· 고객 상담 및 유치 · 고객관리 · 마케팅 기획
중소기업 인수심사 전문위원	· 중소기업 보험 및 보증 인수건 중 일정금액 이상 전문심의를 통하여 보험사고 발생 방지 및 리스크 관리	· 중소기업 보험 및 보증 인수심사
단기수출보험 인수심사 전문위원	· 단기수출보험 인수건 중 일정금액 이상 전문 심의를 통하여 보험사고 발생 방지 및 리스크 관리	· 단기수출보험 인수심사
중장기성 수출보험 인수심사 전문위원	· 중장기성 수출보험 인수건 중 일정금액 이상 전문심의를 통하여 보험사고 발생 및 리스크 관리	· 중장기성보험 인수심사
교수위원	· 무역보험아카데미 강의 및 강의자료 집필, 업무제도 발전방향 연구 등 무역보험의 제도적 발전에 기여	· 업무강의 · 연구활동
채권관리위원	· 국내외 채권관리·회수, 추심 기관 관리 및 소송 업무를 전담 수행	· 채권회수 · 채권법무 및 소송
감사위원 (준법감시인)	· 법령 및 내규준수, 사고예방활동 등 상시 내부 통제업무와 그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	· 컴플라이언스 · 복무·윤리 감찰 및 점검 · 준법교육 및 확산
법정관리위원	· 기업회생절차 진행, 채권 회수업무 등 법정관리인 업무를 보조	· 회생기업 현황분석 · 회생계획안 모니터링 · 개별건 채권관리
중소기업 컨설팅위원	· 경영노하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 하기 위한 수출·경영 등 컨설팅	· 수출컨설턴트
사회적경제기업 경영자문위원	· 사회적 경제기업 경영 개선 지원 및 자문	·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컨설턴트
핀테크사업지원 자문위원	· 비대면채널 서비스, RPA(업무자동화) 등 핀테크 업무와 그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	· 비대면채널 서비스 관리 · RPA 관리
정보보안위원	· 정보통신망·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그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	· 정보보안 · 개인정보보호
안전관리위원	· 안전, 보건 및 시설관리 관련 업무와 그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	· 시설관리 · 사업장 위험성 평가
자금운용 자문위원	· 자금운용, 채권 발행 및 관련 시스템 관리업무와 그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	· 자금운용

[별표2] 피크임금 산정기준

가. 일반직원, 사무직원 및 기한부고용계약이 아닌 별정직원

피크임금 구성항목	산정기준
기본연봉	· (최초 산정시)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12개월간의 기본연봉(계약연봉 기준) · 매년도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
직무연봉	· (직위·직급) 임금피크제 적용 개시 직전의 직위·직급 기준 · (직무등급) 수행하는 직무의 직무등급 적용 · (직무연봉표) 급여지급 시의 직무연봉표에 따름
내부평가급	1.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내부평가급 지급 대상자 -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위·직급, 직무연봉표 기준 중간등급으로 산정한 내부평가급 2.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자 -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정기상여금 지급 금액(계약연봉 기준)

나. 기한부고용계약 별정직원

피크임금 구성항목	산정기준
기본연봉	· (최초 산정시)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12개월간의 기본연봉(계약연봉 기준) · 매년도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
내부평가급	· 고용계약상 성과급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,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12개월간의 내부평가급 지급금액